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5월 2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5월 7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5월 15일

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김 팔 근

나. 제안이유

○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, 시간 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한 근무 환경에 기반한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

다. 주요내용

-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및 연가 사용 활성화
 -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의2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O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O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O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한 근무 여건 조성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,

O 검토 결과,

•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, 연가로의 전환 방식도 허용하여 공무원에게 보상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,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조직 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특히, 상대적으로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생활 적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집행부서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특정 시기 연가 사용 집중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-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